

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(방문목욕)

표준약관 제10068호

이용자, 제공자 및 대리인(보호자)은 장기요양급여 중 방문목욕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.

계약당사자				
이용자 (갑)	성명	(인)	등급 (인정번호)	
	생년월일		연락처	
	주소			
	기타	☒ 일반 ☐ 40% 경감 ☐ 60% 경감 ☐ 기초생활수급권자		
제공자 (을)	시설명		시설종류	
	시설장 성명	(인)	연락처	
	주소			
대리인 또는 보호자 (병)	성명	(인)	관계	갑의 ()
	생년월일		연락처	
	주소			

장기요양급여 변경 계약서

1. 계약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.

2. 변경 사유 :

* 상세사유 (개인사유 혹은 기타사유일 경우)

3.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* 변경 전 *

급여종류		월 이용 횟수	비용수가	급여 비용계	공단부담액	본인부담액	비고
방문 목 육		월()회					
합 계							

* 변경 후 *

급여종류		월 이용 횟수	비용수가	급여 비용계	공단부담액	본인부담액	비고
방문 목 육		월()회	71,190원				
합 계							

4. 등급별 재가급여 이용 월 한도액

구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
등급별 한도액	2,512,900원	2,331,200원	1,528,200원	1,409,700원	1,208,900원

※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
장기요양급여 변경 계약서

5. 방문목욕 시간별 수가 및 본인부담금

구분	수가	15%	9%	6%	기초수급권자
목욕차(차량)	88,990원	53,390원	32,040원	21,360원	무료
목욕차(가정)	80,230원	48,140원	28,880원	19,260원	
차량 미이용	50,100원	30,060원	18,040원	12,020원	

*주1회 60분이상 이용 시(40분이상 이용 시 60분이상 수가 금액의 80% 적용됨), 월 4회 기준

5.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기로 한다.
6. 단, 장기요양급여 변경계약서 이외의 항목 및 내용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(방문목욕)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.

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기로 한다.

년 월 일

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'갑'과 '병'에게 제공하였습니다.

'을' 시설장 (인)

상기 내용을 읽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.

'갑' 이용자 (인)

'병' 대리인(보호자) (인)